###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3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 강민국·정동만·양금희

김석기 · 김영식 · 허은아

박성민 · 서일준 · 한무경

이 영·박대출·김 웅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44%), 친모(30%)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 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음.

이는 「아동복지법」 제4조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학대 아동을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피해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 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 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29조의2, 제7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을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로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의 제목 중 "등의권고"를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7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3
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	
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	
호할 경우에는 <u>신속히 가정으</u>	<u></u> 안정된 환경에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상담·교육 <u>등의 권고</u> ) 시·	한 상담·교육 <u>등 지원</u> ) <u>①</u>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	
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u>등을 제공하여야 한다</u> .
<u>것을 권고할 수 있다.</u>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 설></u>

<u>2의2.</u> (생략)

3. ~ 7.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
○ - 제1청세 메근 사다 ㄱㅇ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
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u>2의3.</u>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u> 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
	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